

2026년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직 급	임용기간	인원	직무내용	임용예정 부서
정 책 지원관	지방행정 주 사 보 (일반임기제)	1년	2명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 의원의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의 회 사무국

※ 2026. 11월 중 임용 예정이며, 임용기간은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제31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55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격요건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행정, 법무, 회계, 감사, 조사, 분석, 연구, 입법지원 등의 실무 경력

- ※ 실무 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 실무 경력의 경우 소속 등을 특정할 수 없는 프리랜서와 같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의 경력을 인정하며, 인턴 및 사무보조·행정지원·연구보조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직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닌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예시: 주 20시간 근무)
- ※ 시간제 근무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4. 보수 수준 및 복무

가.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에 따라 7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범위 중 하한액으로 책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일반임기제)	70,782천원	50,272천원	주 5일 40시간

-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나.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지방공무원 관계 규정에 의함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인적성검사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10. 6.(화) ~ 10. 12.(월)	10. 16.(금) (예정)	10. 19.(월) (예정)	10. 21.(수) (예정)	10. 30.(금) (예정)	11. 4.(수) (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문자 안내
- ※ 합격 발표는 응시번호로 공개되므로 원서 접수 시 반드시 확인
- ※ 인적성 검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 면접 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재공고 사유 발생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 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하며,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

나. 인적성 검사(온라인 검사) : 인성·역량 및 조직적합도 등 진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자료를 면접 시 활용
- 인적성 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시 면접 시험에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

다.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면접시험 안내	
▶ 평가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법 :	개별면접(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요소중 ①→②→③→④→⑤ 순대로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 추가 합격자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12.(월) 09:00 ~ 18:00 [4일간]
※ 주말·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 인사교육팀
(북구 우치로 77, 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주소 : (우 611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의회사무국 인사교육팀
-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익일특급)에 한하며, 접수마감일의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함
- ▶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북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62-410-8513/서류 분실 방지 목적)
- ▶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7,000원**)하거나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를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
- ▶ 우편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서식]

○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응시 수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수입증지(7,000원) 구입 후 제출
⇒ 북구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 구입
※ 정부수입인지 불가, 응시철회에 따른 수수료 반환 요청 시 카드 결제 내역은 결제 당일만 취소 가능하므로 현금 납부 권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서식]

○ 인적성 검사 결과 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서식]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기관 발급 서식이 없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내역 작성 후 기관장 직인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 제출
- 발행기관(단체)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 주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 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전체) 및 개명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 대학원 이상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기타 모집 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 실적, 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 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 요지만 첨부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 원본으로 제출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9.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작성 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기재로 불합격 처리 또는 임용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서류 발급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하며, 응시수수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응시수수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수수료 반환 요청 시,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 당일만 취소가 가능하므로 현금 납부 권장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당초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응시자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의회사무국 인사교육팀 (☎ 062-410-8513)